

# 충청북도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(안)

의안 번호	14
----------	----

제출년월일 : 1999. . . .

제 출 자 : 충청북도지사

## 1. 제안이유

충청북도 조직과 인력의 축소개편에 따라 물품관리자의 관직을 재정비하고,

'98 정기재물조사결과 시·도 건의사항에 대한 개선대책으로 행정자치부장관 준칙(안)에 의거 불용품의 소요조회 대상을 조정하여 물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함.

## 2. 주요골자

- 조직 개편으로 기구 및 물품관리자의 관직지정을 변경
  - 회계과 → 총무과, 회계과장 → 총무과장
- 불용품의 소요조회 대상 조정
  - 동일 시·도 소요조회
    - : 단위당 물품취득가격 (장부가격기준) 10백만원 미만의 물품
    - ⇒ 동 취득가격 5백만원 이상 10백만원 미만인 물품으로서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

3. 의안전문 : 따로붙임

4. 신·구조문 대비표 : 따로붙임

5. 관계법령 발취 : 따로붙임

## 6. 개정근거

- '98지방자치단체 정기재물조사결과 개선대책
  - : 행정자치부 공기 13330 - 360 ('98. 8. 3 )호

## 충청북도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(안)

충청북도물품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6조제3항제2호중 “물품취득가격(장부가격기준)이 10백만원 미만인 경우”를 “물품취득가격(장부가격기준)이 5백만원 이상 10백만원 미만인 물품으로서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”으로 한다.

제28조제2항중 “회계과”를 “총무과”로 한다.

제30조중 “회계과장”을 “총무과장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